

콩나물 수거검사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콩나물은 우리 조상의 슬기로 이룩한 전통 식품으로 정부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분류하고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기인한 각종 공해로 토양과 수질 및 대기의 오염도가 극에 달하고 각종 농작물의 농약 공해로 콩나물 종자콩에까지 심각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업계에 불어 닥친 농약사건의 파문은 무고한 우리를 범법자로 매도시키고 있으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손실과 어쩌면 조상전래의 전통식품인 콩나물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는 위기의식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는 콩나물에 대한 실체의 파악없이 식품위생관리라는 목적만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일선행정기관의 안이한 처사와 특종만을 의식한 일부 언론 기관의 편파적인 보도가 빚어 낸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우리는 이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한낱 속죄양으로써 당해 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앞에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약 콩나물과 악덕업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서 누구에게나 떳떳한 산업역군으로 국민위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생업에 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콩나물의 수거 검사에 관한 행동 요령을 보내드리니 숙지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무지로 인하여 다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1.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굳이 국민보건위생을 목적으로 수거 검사를 한다면 출하 유통 단계에 있는 콩나물로 국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조 제7호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영업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식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의 대상으로 하고있는 「제조가공식품」과 영업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농수산물 즉 「자연식품」으로 대별된다.

콩나물은 통계청고시(제91-1호 92. 1. 1)[별표 1-1]에서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 및 기타 특정 고정

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 활동과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수경 재배시설, 공장설비등과 같은 특수 고정 시설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라 하여 버섯과 함께 「시설작물생산업」(제01140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본식품 관리요령(보사부고시 제86-1호, 86. 1. 13)[별표 1-2]에서도 배추, 무우와 함께 채소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보사부고시 제89-6호, 89. 2. 20)[별표 1-3]에서도 분명히 제조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규정하여 성분과 규격을 명시하여 놓았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하는 유권해석상의 혼란으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소관 다툼은 국무총리실의 식품관련 소관부처 조정(국행이 100-388, 84. 9. 1)[별표 1-4]에 의하여 농림부(당시 농림수산부)로 소관이 확정된 몇가지 사실만을 볼때 콩나물이 농수산물임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굳이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콩나물을 관리하겠다면 여타 농산물과 같은 차원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의 설정 등 행정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현 제도상 수거검사가 불가피 하다면 출하나 유통단계의 먹을 수 있는 콩나물로 국한시켜야 한다.

2. 콩나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어도 원료콩에 설정된 잔류농약허용기준치 이하의 농약 검출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산업공해로 대기, 수질, 토양등이 오염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농작

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농약의 방제가 불가피하며 콩나물재배에 이용되는 종자콩도 농약 오염에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몇년전에 수입콩나물콩에서 허용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예가 있어 종자콩의 농약 오염도는 이미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할 경우 농약성분의 잔류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고시한 잔류농약허용기준치중 콩나물 종자콩인 대부분에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설정하였다면 마땅히 콩나물까지도 잔류한다는것은 기정사실로 대부분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가 콩나물의 기준치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통하여 “원료콩에 설정된 잔류농약허용기준치 이하의 농약이 콩나물에서 검출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행이 51241-207, 94. 12. 24)[별표 2-1]고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있다.

따라서 보사부고시(제 1993-102, 93. 12. 31)[별표 2-2]로 설정된 대부분(종자콩)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었을 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없는 것이다.

3. 콩나물 농약사건 「식품위생법」과 「농약관리법」의 적용 한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콩나물 농약사건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것”은 판매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위반으

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비교적 무거운 형벌이 주어 지는데, 농약관리법이 적용될 경우 농약관리법 제18조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의 규정위반으로 100만원미만의 벌금형으로 식품위생법 적용시보다 벌칙이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그러면 콩나물은 어디까지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어떤 부분이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콩나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산물로써 여타 농산물 재배시와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 허나 궁극적으로 “먹는다”는 관의의 식품으로써 식품위생 차원에서 관리가 불가피 하다면 먹을 수 있는 즉 출하나 시장유통 단계에 있는 콩나물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종자콩의 수침이나 재배단계의 것은 「농약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협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종자콩의 발아 초기의 농약의 사용가능 문제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식품위생법」상 콩나물이라 함은 먹을수 있을 정도로 재배된 상태의 것을 지칭함이 타당”(식안 65421-3241, 94. 8. 11)[별표 3-1]하며, “콩나물 재배시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이는 농약 관리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료인 콩으로부터 잔류농약이 콩나물에까지 이행되어 식품공전중 대두에 정하여진 허용치 이상 검출되었을시는 식품위생법상 판매금지 해당 품목이라 할수 있다.”(식관 65451-522, 95. 7. 5)[별표 3-2]는 회시

내용을 볼때, 어느 일선행정기관이고 출하·유통단계 이외의 콩나물을 수거한다는 것은 밭이나 논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무, 배추 등을 불법으로 뽑아가는 경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여, 혹 식품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유통단계 이외의 것을 수거하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위의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정중히 거절하시고, 계속 요구시는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협회전화 서울 203-4500 대표)

4. 회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가 깃든 전통식품인 콩나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 다소비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제 역군으로 국민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우리의 생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양질의 콩나물 재배를 위하여,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당부합니다.

- 가. 낡고 비위생적인 시설 및 기구는 개수 또는 교환토록 합시다.
- 나. 재배장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시고 바닥 배수와 실내 통풍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콩나물에 불법 농약의 사용은 금하여 주십시오.
- 라. 콩나물 수거검사와 관련하여 본 유인물을 숙지하시고 담당공무원과 이견이 있을시 본 유인물을 보여

01

02

03

04

05

.....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 모두가 굳게 단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서로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합시다.

바. 본 유인물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때는 협회(02-203-4500)로 연락 주십시오.

통계청 고시 제 91-1호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1984. 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1991년 9월 9일

통계청장

통계청장

부
록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등록번호	9408-005호
* 허가일자	94. 8. 26

단위서류	등록증
------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 02) 222-1037 / 저술 538-533 / 휴대전화: 이승현

문서번호 02210-381

시행일자 1994. 9. 3

[정수]

수신 대한민국체육회장

참조

제 4 국립국립체육회장의 회신

1. 대주별 9408-005호 [94. 8. 26]의 경제기획원에서 우편으로 이송된 대주별 9408-007호 [94. 8. 26]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일반적으로 노동자로 체계화지 않고, 출입 및 기타 특성 고정설비내에서 봉나물을 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신설은 01140 : 시설작물생산업"에 분류됩니다. 끝.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이 단위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등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0114 시설작물 생산업(Growing of crops under special frames)

- 01140 시설작물 생산업(Growing of crops under special frames)
마포구에 및 청계, 풍나들, 생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배화지 않고 둘다 농경 고정설비내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공장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설비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일컫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세베기는 철근 콘크리트,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일관한 양식재배를 하는 경우에 시설작물을 세베로 보지 않는다.

<포함>

- 풍나들 세베
- 수경 재배, 수종 재배, 수종 작물
- 시설작물 세베, 각종 작물
- 비짓 세베, 세취
- 온반시설 세베, 각종 작물
- 솔로 재배, 세취
- 공중식 고정설비시설 세베, 각종 작물

<제외>

- 흙밭작물 농산, 시설 재배 (01122)
- 종묘 생산, 시설 재배 (01123)

0112 축산업(Farming of animals)

- 각종 육자동물을 번식·증식·사육하여 판매용 육자동물 및 동물성 단장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 말 및 양 사육업(Parenting of cattle, sheep, goats,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dairy farming)
정, 고기, 양, 모피 또는 가축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양, 양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국립체육회장
94. 8. 26

[별표 1-2]

식 품 군		관 리 도 룐							
주제(제작, 보관, 판매, 유통, 이송, 유통)	내용	보관온도	습도(%)	보관기한	비 고	보관온도	습도(%)	보관기한	비 고
○ 안전보관처지기한									
제작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제작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제작 온도	~	~	~	~	제작온도 ~15~25	75~9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저장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저장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송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송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유통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유통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보관장소									
제작장소에서 이송장소를 얻어 이송하는 시장판매에 활용되었을 증거에 보관하여 야 한다.									
제작장소는 출연 등과 같이 제작자가 판매하는 척수를 살피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보관처지기한									
제작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제작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관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저장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저장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송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송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유통온도 ~15~25	75~95	34~45	34~4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유통온도 ~15~25	75~95	34~45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기본식품 관리요령

1996. 1. 11. 보건복지부 제 444 호

1. 목 차

주제 식품에서 개찰기는 신장의 험험적
한정으로서, 예상된다.

2. 총 9

이 조달체계 기본식품이라 일은 우리 국민이 상
식하는 척도를 달한다.

3. 기본식품의 종류

제작온도(°C)		보관 기한			
종	급	급	급	급	급
단 허	4	-15~-18	74(157)	-	
단 유통	4	-15~-18	29(158)	-	
단 유통	4	-15~-18	29(159)	-	
※(※)는 저온보관처지기한					

4. 식품관리의 일반원칙

- 모든 식품은 척자와 척급, 관리처에 맞는
제작온도, 유통온도에 따라 관리된다.
- 제작처에 맞게
 - 단체화된 척장
 - 시장 및 대형마트 척장
 - 거래·국가포장의 척장
 - 식품유통자의 척장
 - 소규모 가게수
- 학교와 선수단 척장
- 관리처 척장은 신장하여 1인 1정
(정장 또는 1정당)
- 72시간의 유통보관기한 또는 1인 1정당 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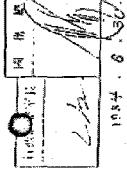
5. 식품별 관리도령

- 생장, 내용, 보관처지기한은 개설이나 충전업체
별로에 제품을 보관한 경우, 충전승기기기와 함께
로 충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별표 1-4]

제소인(예수, 희숙, 양복, 광, 오이, 암 예수, 시금치, 삼자, 풀, 나물)		○ 보관장 체소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표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체소와 물이 있는 쇠스가 섞이지 않도록 물과 보관하여야 한다. 30°C 이상의 고온보관은 물이 빠져 가버려 수 있다. 액체는 저온을 위해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해 놓고 그늘 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냉장보관(식자기장) 제작(예수, 양복, 시금 치, 풀, 나물, 암자)		제작온도(7) 도량기 한 풀 입 4~6 1. 19 제작온도(7) 도량기 한 풀(양파, 풀, 나물) 제작온도(7) 양파, 치 자(7) 15~25 39 제작온도(7) 양파, 치 자(7) 4~6 24 제작온도(7) 양파, 치 자(7) 15~25 39 도량기 한 풀 입 7~10 54 도량기 한 풀 입 15~25 39 도량기 한 풀 입 15~25 39	
조사비율(간접법) 상고추장, 고추자 주, 쇠소)		○ 보관장 정독을 수시로 주입해 빙어 향기를 차이나. 장독의 입구는 그을음날을 키워 관내의 청결을 차운다. 간장에 주방이나 박물관을 경우 고부분을 세척하고 헛번 대출이 보관할 나.	
○ 보관장 체소는 친법 성장기(7) 소금(7) 사용 수수기름(7)		○ 보관장(8) 체소는 드물면 주부의 청용(7)까지 모든 단체에서 빙장 또는 영동(7)으로 보관된다. 영동(7) 3~5일 정도 저장하고 할 때는 45이하, 장기간 저장하는 영동(7) 보관한다. 영동(7)은 씻겨 아니하고 냉장실에로 보관한다. 생선은 대개는 청개인 후 소금(7)에 넣어 물기를 없앤 다음 대본 식물과 본래의 내용으로 보관한다. 국가는 반드시 찬장에 냉장고(7)나 생선(7)이나 한동안 담그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수신자 : 제조부(화소, 관, 서죽, 흥), 농수산부, 보건환경부,			

10
09
08
07



農林部 第2行政處長官印

1984. 6. 30.

報 告 書

關 係 項 目 下

4. 改善方案

* 품목별 관리 체계 확립(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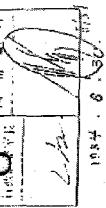
- 대체로 대체로 협회를

설立 認可 (76. 10월), 협회법 제41조(50, 12, 18)에
大韓畜産加工協会 설립

※ 特異성이 있다. 대체로 7. 30) 원칙 있음.

○ ① 국토保健의 次元에서 ② 一般食品
국제 관리 要素의 ③ 관리監督 経济를
진행 하도록 한.

5. 指造建議

1. 관리 체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부
建 議 方 案.※ 1984년 9月4日 흥국은행 관계부처
合意 協議

農林部 第2行政處長官印

1984. 6. 30.

報 告 書

關 係 項 目 下

題 目：食品関連所管一部調整

1. 食品製造業에 對한 韓·許可 및 計劃多樣화 및
所管부처 不明等의 問題에 對한 制度改善作業은
農水產物 加工食品의 管理制度 調整計劃에
現在 關稅法의 改正案을 依循하여 있습니까.2. 同 農水產物 加工食品의 管理制度 改善計劃의 基本原則-
農水產物 製造 加工食品에 國際 調整 調整之 保社部主導
一元化 하기。 農水產物는 一元化하기로 된 이 출처다.
※ 관리 체계는 二元化하기로 된 이 출처다.이 경우에 따라 食用油脂帶給 및 품질을 生產의
所管부처決定에 間하여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調整 請示드립니다.

3. 食用油脂帶給이 商部 所管부처 調整

가) 食用油脂에 關于 庫務規況
※ 菓油連部 施行脂物 生量計劃 및 販售潤解斗 食用油脂
需/餘計劃 提示
○ 保社部：食用牛脂 및 畜油 輸入的庫務逐
※ 脂肉의 油脂 生產及 消耗에 關于의 帶給計劃 植立陶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별표 2-1]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2-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7 / 전화 (02)770-2733 / 팩스 777-0105

성	이	자
집	일자	간
수	번호	제
체	리	과
급	당	자

제목 : 두체 협회 철의에 대한 회신

내 협회에서 우리 설에 문화한 두체에 관한 철의(0402-0305호)에 대해서 높임과 회신합니다.

불입 : 두체 협회 철의에 대한 회신. 글.

4.新聞報道 1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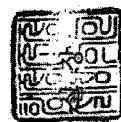
< 83. 6. 17 韓鮮日報 >

- a. 83. 6. 31 全國農山漁業者가 假稱 大韓農山漁
衛生管理協会를 構成, 同年 6月부터 '83年 5月
까지 整治 濫水經營部 保社部을 討回, 物食
搬賣, 賽馬多 亂勢가 發生나
b. 业水自 1981 年 保社部는 事業 所營業 以來
ICHI農場이나 物食 異常 繼續 하지 않아고
發售.

2. ② 獻 接受 里 無理 經營

'83. 7. 28 : 告白 生產者聯合會 釜山 建設基盤株式(주식会社)
社長 : 檢針中野重 中尚回信
8. 1. 17 : 檢察結果 最終回信

• 食品衛生法上 賽馬對象이 아님
• 農山漁業生產、販賣管理는 濫水經營
管轄
• 檢察 有 賽馬類의 禁止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豆菜協會 質疑에 대한 회신

[별표 2-2] 농약별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일부발췌)
(보사부고사 제1983-102호: 93.12.31)

농약성분명 (주요품목)	잔류허용기준 (ppm)	해당농산물을
Captan (캡탄수학제)	2.0	대두, 땅콩, 아몬드
	5.0	보리, 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떡기, 시과, 배, 포도, 레몬, 수박, 배론, 자두, 밀, 망고, 체리,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간포도, 양상추, 이보카도, 호박, 셀러리
	10	파란, 살구
Benzomyrl (베키노밀수화제)	0.1	쌀, 땅콩, 토란, 아스파라거스, 침깨, 기타종실류, 온향, 밤, 피칸, 아몬드, 호도, 기타 견과류
	0.2	대두
	0.5	보리, 옥수수, 밀, 호밀, 수수, 쿠리, 대밀, 조, 가지, 오이, 호박, 아보카도
	1.0	양배추, 미늘, 당근, 셀러리, 수박, 버섯류, 바나나
	2.0	녹두, 팥, 강남콩, 양파, 배론, 사과, 배, 모과, 자두, 감, 파인애플, 망고
	5.0	상추, 양상추, 고추, 토마토, 떡기, 포도
	7.0	밀감, 레몬, 자몽, 오렌지, 기타 감귤류
	10	복숭아, 체리
	50	호프

(1) 豆菜 生產行爲의 性格問題

- 콩나물과 속주나물생산은 토양과 빛을 이용하지 않아 전통적인 農作物栽培法과는 차이가 있지만, 土壤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등 새로운 農作物栽培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물 재배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豆菜에 대한 殘留 農藥 허용기준치 設定問題

- 현행 農藥管理法上 인들비외의 農藥은 콩나물생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콩나물자체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설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원료콩에 설정된 殘留 農藥 許容基準值 이하의 農藥検出時에는 處罰對象이 되지 않음

- 다만, 원료콩에 설정된 殘留 農藥 許容基準值 이하의 農藥検出時에는 處罰對象이 되지 않음
- 그린벨트內의 콩나물 재배사 설치 취용문제

- 開發制限區域內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는 都市計劃法施行規則規定事項이므로, 都市計劃法의立法趣旨에 따라措置할 사항임



부 호 보 장 학 회 사

[별장 3-1] 제작자: 중앙총무부 / 전화: 02-503-7586 / 전송: 503-7586(01회)
문서번호: 식약처 65421 - 7354

시행일자: 1994.08.11

수신: 서울 송파구 병이동 62-3 펜원빌딩 302, 박재근

제출: 문의회신

- 귀령회의 무금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대두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 농약은 농산물의 재배등의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직접 식품의 성장기관 또는 유통 및 수계로부터 농산물에 이탈되어 농약성분이 전류됨

○ 현행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농약면전 사용자점상 "인플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농약도 사용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의 전류비용기준은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나. 질의 2)에 대하여

○ 농나들은 국민 디소비식품으로 선정하여 각 시·도에서 수거검사 등 충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대상에는 농나를 이외에도 다수의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 질의 3)에 대하여

○ 농산물의 검체는 적정 정도로 세탁되어 통상적으로 냅을 수 있는 상태의 검체를 수거함이 원칙이라 판단됨. 따라서 농나들의 검체상태도 적절수준으로 차별화

출하상태의 농나물을 대상으로 험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니 종차종의 농약기의 농약의 사용가능·불체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질의 4)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상 농나물에 대한 전의 규정은 없으나 농나물이라 함은 역할 수 있는 정도로 차별화 상태의 것을 지칭함이 타당임.

Thiopanate-methyl (치오판수화제)	0.1 0.2 0.5 1.0 2.0 5.0 7.0 10 50 50	쌀, 망콩, 토란, 이스파리가스, 참깨, 기타 총살류, 은행, 밤, 피칸, 아몬드, 호도, 기타 건과류 대두 보리, 옥수수, 밀, 호밀, 수수, 귀리, 메밀, 조, 가지, 오이, 호박, 아보카도 양배추, 마늘, 당근, 셀러리, 수박, 버섯류, 바나나 녹두, 팥, 강남콩, 양파, 미elon, 시과, 배, 모과, 자두, 감, 파인애플, 망고 상추, 양상추, 고추, 토마토, 땅콩, 포도 밀감, 래몬, 자몽, 오렌지, 기타 감귤류 복숭아, 체리 호프
Cabendazim (카벤다수화제)	0.1 0.2 0.5 1.0 2.0 5.0 7.0 10 50	쌀, 망콩, 토란, 이스파리가스, 참깨, 기타 총살류, 은행, 밤, 피칸, 아몬드, 호도, 기타 건과류 대두 보리, 옥수수, 밀, 호밀, 수수, 귀리, 메밀, 조, 가지, 오이, 호박, 아보카도 양배추, 마늘, 당근, 셀러리, 수박, 버섯류, 바나나 녹두, 팥, 강남콩, 양파, 미elon, 시과, 배, 모과, 자두, 감, 파인애플, 망고 상추, 양상추, 고추, 토마토, 땅콩, 포도 밀감, 래몬, 자몽, 오렌지, 기타 감귤류 복숭아, 체리 호프

04

05

06

07

부

보건복지부

[별표 3-2]

우 427-760 경기도 광주시 풍정동 1/ 편화 (02)503-7584 / 전술 503-8500 / 담당 : 신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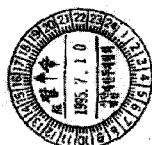
문서번호	식관 65451 - 522	신		지	
		일자	시간	점	제
수신	대한무체험회장	번호			
		처리과			
		답장자			

제목 : 질의에 대한 확신

대구법 9503 -0016 (95.06.22)에 관련한 구체적 제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1. 품니풀은 식약 65421-3241('94.08.11)호로 7) 혁신한 바와같이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선정하여 출점관리 되고 있고 각 시도(시·군구)별로 적정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판매업소등에서 활하고 있고
2. 품니풀에서 능.익이 걸을 것인다면 이는 품나풀 제제에서 능.익을 사용하였거나 편로인 풀로부터 이행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품나풀 제제에서 능.익을 사용하여 전류.능.익이 걸을 되었다면 이는 능.익 관리 외반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원로인 풀으로부터 전류.능.익이 품나풀에까지 이행 되었을 경우 식품공정증 '대두'에 정착되며 있는 능.익류 허용처 이상 품을 외가를 때 식품위생법 제 42조 제 2호에 규정된 판매를 금지에 해당되며 품나풀이라 볼수 있을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